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894692			
등록번호	110111-8946927			
상 호 경북에너지 주식회사 (Gyeongbuk Energy Corporation.)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34층(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회 관)				
공고방법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에 개재한다.				
	재한다. 다만, 폐긴	<u>ŀ</u> , 휴간, 기타 부득이	티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 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거 발간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	2024.07.10 변경 2024.07.11 등기
<b>1주의 금액</b> 금 5,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del>10,000,000 주</del>				
1,000,000,000 주				2024.07.10 변경 2024.07.1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del>보통주식</del>	총수	<del>1,000 주</del> 1,000 주	<del>금 5,000,000 원</del>	
발행주식의 <del>보통주식</del>	총수	<del>1,280 주</del> 1,280 주	<del>금 6,400,000 원</del>	2024.06.20 변경 2024.06.20 등기
발행주식의	<u>ネ</u> 스	111,593 주		2024.09.06 변경
보통주식	<del>3</del> T	67,793 주		2024.09.19 등기

-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사업
- 2.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3.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 4.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

등기번호

894692

# 무지원사업

- 6.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 7.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9.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10. 전력설비.차량. 장비의 관리, 운전 및 임대사업
- 11. 건설관리 및 설비관련 서비스 업
- 12.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자금차입 또는 채무보증 기타 다른 활동
- 13. 기타 위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부수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

###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김재호 6503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32, 302동 1203호(마곡동, 마곡엠 벨리3단지)

사내이사 김재호 650310-\*\*\*\*\*

2024 년 09 월 06 일 주소삭제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헌 750111-\*\*\*\*\*

2024 년 09 월 06 일 취임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정택근 781030-\*\*\*\*\*

2024 년 09 월 06 일 취임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감사 이건일 720706-\*\*\*\*\*

2024 년 09 월 06 일 취임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대표이사 김재호 6503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32, 302동 1203호(마곡동, 마곡엠 밸리3단지)

2024 년 09 월 06 일 취임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우선주식

- (1) 의결권.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 (2)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i) 제1종 우선주식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일(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일십퍼센 트(10%)의 배당을 비누적적으로 보통주식에 앞서 우선 배당 한다. 명확히 하면, 제1종 우선주식은 제2종 우선주식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을 할 수 없다.
- (ii)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진 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한다. 이때, 보통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우선배당액을 초과할 경우 보통주식과,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동일한 주당 배당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2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iii)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iv)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1종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제1종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

# 등기번호

894692

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제1종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i) 발행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내부수익률을 일십퍼센트(10%)로 만드는 금액(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기배당 혹은 기지급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을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분배하고, 제2종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순위로 분배한다.
- (ii) (i)호에 따라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해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그러한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이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식,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액이 동일한 주당 분배금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2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2024 년 09 월 06 일 설정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제2종우선주식

- (1) 의결권. 제2종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2)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iii) 제2종 우선주식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일(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일십퍼 센트(10%)의 배당을 비누적적으로 보통주식에 앞서 우선 배당 한다. 명확히 하면, 제2종 우선 주식은 제1종 우선주식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종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을 할 수 없다.
- (iv) 제2종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진 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한다. 이때, 보통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우선배당액을 초과할 경우 보통주식,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동일한 주당 배당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1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v)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vi)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2종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제2종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제2종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i) 발행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내부수익률을 일십퍼센트(10%)로 만드는 금액(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기배당 혹은 기지급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을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분배하고, 제1종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순위로 분배한다.
- (ii) (i)호에 따라 제2종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해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그러한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이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식,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 액이 동일한 주당 분배금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1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

등기번호

894692

하여 분배를 받는다

2024 년 09 월 06 일 설정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24 년 05 월 14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4 년 05 월 14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4년09월25일 16시58분26초